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2021.03.30



제 1 조 (목적)

- ① 본 규정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효율적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②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의 사항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조 (구성)

-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하며,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⑤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⑥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⑦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⑧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⑨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임하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이하 "위원장")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상정될 안건을 검토한 경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④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조 (소집)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정당한 이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 (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6 조 (기능 및 권한)

- ① 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위원회의 권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 소집청구
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5.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6.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에 관한 이사의 보고 수령
7. 업무 · 재산 상태 조사
8. 직무수행을 위한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9. 외부감사인의 선정 또는 해임요청
10.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수령 및 평가
11. 연간 내부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검토
12. 기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③ 위원회의 의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3.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청취
4.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 보고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6. 외부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
7.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대면회의 개최 및 평가 결과 등의 문서화
8. 외부감사인 선정 시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하고, 감사보고서 제출 후 준수 여부 확인
9. 기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

제 7 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8 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위원과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9 조 (감사록)

-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각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10 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칙(2021.03.30)

이 규정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